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한명희 의원 외 11명
- 나. 의안번호 : 제2186호
- 다. 발의일자 : 2017. 10. 30
- 라. 회부일자 : 2017. 11. 1

2. 제 안 사 유

- 서울에너지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 15조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련법령 :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
- 1) 신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양성평등을 기하기 위한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¹⁾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기업이며, 이사회는 기업경영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므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는 동 개정안의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.
- 다만, 동 개정안은 강행규정이 아닌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량규정에 해당되고 향후 서울에너지공사의 이사회 구성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임.

1)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(생략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~⑤ (생략)

- 참고로, 「서울에너지공사 정관」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에너지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3인,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²⁾ 1인을 두며,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.
- 2017년 11월 기준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 경우 전체 10명 중 여성은 위촉직 비상임이사 1명에 그치고 있으며, 전체 직원 219명 중 남성이 193명 (88.1%), 여성이 26명(11.9%)으로 여성 비율이 낮고 특히 3급 이상의 고위직에 여성이 없는 상태임³⁾.

〈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구성 현황〉

구 분	이 사 회				
	계	상임이사	비상임이사 (당연직)	비상임이사 (위촉직)	감사
남 성	9	3	2	3	1
여 성	1	0	0	1	0

- 따라서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, 현행 조례 제10조 및 「서울에너지공사 정관」 제10조에 따르면 비상임이사 중 위촉직 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, 임원 추천 단계에서부터 양성평등이나 여성지위향상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.

2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.

3) '17.11월 기준 3급 이상 직급에 여성은 없음

정원/현원	임원	1급	2급	3급	4~8급	업무직	전문직
221/209	4/4	6/4	10/9	25/23	163/159	5/5	8/5